

서기 1958년 6월 6일 <제 3 종우편물인가> (매주월요일발행)

등록번호 제 1,238 호
등록년월일 서기 1947년 8월 26일

제 1643 호

전라남도보

서기 1985년 1월 28일
발행인
전라남도지사
발행소: 광주시 광산동 13
전라남도문화공보담당관실
우편번호 500

목 차

1. 전라남도 조례 제 1496 호 전라남도 이륜 자동차의 면허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2. " 규칙 제 1413 호 전라남도 고압가스 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중 개정
제 1414 호 전라남도 읍면 상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
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
3. " 고시 제 8 호 도시계획 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제 9 호 광양 상수도 사업
제 10 호 어선 호출 부호 취소 및 지정
4. " 공고 제 33 호 어업 면허 처분
제 34 호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
제 35 호 전라남도 지방 공무원 명예 퇴직 시행계획
제 36 호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허가 변경
제 37 호 축산물 작업장(축산물 가공장) 허가 변경

회								
람								

-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 도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비치용 도보는 5년이상 보관한다.

5. 화순군 공고 제 6 호 공기 개각 사용 및 폐기

6. 공문 시행 자동차 등록 직권 말소

'84 전남지역 개발 성금 결산

7. 사 령

조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등의 면허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5 년 1 월 28 일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조례 제 1496 호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등의 면허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등의 면허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전라남도 고압가스 업소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규칙중 개정 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1985 년 1 월 21 일

전 라 남 도 지 사

전라남도 규칙 제 1413호

전라남도 고압가스 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칙 (전문 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시장, 군수, 여천출장소장 (처분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9 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 8 조 및 도시가
스 사업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이하 “처
분”이라 한다)을 함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처분의 평형을 도
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처분의 대상 및 종류) 처분의 대상 및 종류는 별표 1 과 같다.

제 3 조 (처분의 근거) ①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 1 의 증
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처분 대상자의 확인서(별지 제 1호 서식)

2. 관계부서의 지적상황 및 위해보고서

② 확인서를 받지 못하였을 때는 확인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조(처분의 기준) ①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1년 이내에 반복하여 동일사항을 2회이상 위반한 경우 처분청 또는 검사기관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그 시정을 태만히 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의한 처분을 함으로써 가스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의 생활에 현저히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 위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보다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3.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 기준보다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 기간중 영업행위 사실이 적발되었거나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재차 처분할 때에도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 5 조(청문의 절차) 시장, 군수, 여천출장소장 등(처분청)은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내에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변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로 간주하고 처분한다.

제 6 조 (처 분 의 통 지) ① 행정 처분청 (시장, 군수, 여천출장소 등) 은 이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지체없이 당행 업소에 송부하고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허가취소를 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사업정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정지 기간중 당해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저장설비내의 가스 저장량을 확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7 조 (기록 의 보 존) 행정 처분청 (시장, 군수, 여천출장소장) 은 이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에 관련된 증거와 기록을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전라남도 고압가스 제조업 등 행정처분 규칙 ('82.2.22. 규칙 제 1172 호)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별첨>

행 정 처 분 기 준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제 조 허가등	○ 변경 허가없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 경미한 사항 -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사항	• 고법제 4, 5 조 • 액법제 3, 5 조	시정명령 (15일 이내)	사업정지 (20일)	허가취소	
	○ 허가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그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을 휴지한 때	• 고법제 9 조 • 액법제 8 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허가취소 (시정기간 경과 시)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신 고	○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개시, 재개신고 미필	• 고법제 7 조 • 액법제 6 조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휴지, 폐지신고 미필	• 고법제 7 조 • 액법제 6 조	경 고	허가취소 (경고한 날로부터 10 일)		
	○ 특정 고압가스 또는 액화 석유가스 사용 신고 미필	• 고법제 20 조 • 액법제 29 조	시설봉인 (경고한 날로부터 3 일)			
	○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 특정설비, 가스용품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수입한 경우	• 고법제 21 조 • 액법제 21 조	정밀검사 실시			
	○ 영업소 설치 신고없이 영업행위한 액화석유 가스 충전업소	• 액법제 3 조	가스사용 정지 (10 일)	가스사용 정지 (20 일)	가스사용 정지 (30 일)	
	○ 위해방지 조치 신고	• 고법제 14 조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불이행	•액법제 13 조		(3일)	(5일)	
	○ 사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미필	• 고법제 8 조 •액법제 7 조	경 고	사업정지 (3일)	사업정지 (5일)	
	○ 안전관리자의 채용·해임·퇴직신고 불이행	• 고법제 15 조 •액법제 14 조	"	"	"	
	○ 안전에 영향을 주는 주요시설의 개선명령 불이행 사용자	• 고법제 10 조 •액법제 9 조	"	시설봉인		
공급자의 의무 등	○ 수요자 시설에 대한 위해예방 제도·안전 점검 및 개선조치 불이행	• 고법제 10 조 •액법제 9 조	"	사업정지 (3일)	사업정지 (5일)	
	○ 사용신고 미필시설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하지 아니한 수요자의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고법제 10 조 •액법제 9 조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15일)	
	○ 수요자 시설의 안전점검결과·조치결과의 기록을 보존않을 경우	• 고법제 10 조 •액법제 9 조	경 고	사업정지 (3일)	사업정지 (5일)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 공급자의 안전점검 기준 등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재한 자	• 고법제 10 조 • 액법제 9 조	경 고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안 전 관 리	○ 안전관리규정 미제출	• 고법제 11 조 • 액법제 10 조	10 일 이 내 에 제 출 명 령	사업정지 또는 사 용정지 : 3 일	사업허가 또는 사 용신고 취소	
	○ 부적합한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위반자	"	10 일 이 내 에 변 경 명 령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 안전관리규정 준수 및 실시 기록 보존 불이행	"	10 일 이 내 에 이 행 명 령	"	"	
	○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 허위 작성	"	경 고	"	"	
검 사	○ 정기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 고법제 12 조 • 액법제 11 조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10 일)	허가취소	

○ 정기 자체검사 실시 기록을 허위 작성한 자	• 고법제 12 조 • 액법제 11 조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일)	
○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 가스용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제품에 대하여 자체검사 표시를 얹거 나, 검사기록을 보존하 지 않을 시	〃	〃	〃	〃	
○ 자체검사 미 실시 용기 • 냉동기 • 특정설비 • 가 스용품 등을 판매, 임 대사용 또는 판매 목 적으로 진열한 자	〃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 집단공급 • 저장시설의 설치 • 변경공사의 공정 별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액법제 18 조	〃	〃	사업정지 (15일)	저장시 설은 사용정 지
○ 고압가스 제조 • 저장 • 판매 시설, 액화석유가스	• 고법제 16 조 • 액법제 18 조	〃	〃	〃	〃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의 충전·저장·집단 공급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검 사	○ 고압가스 제조·저장시 설, 액화석유가스의 충 전·집단공급·저장시설 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고법제 16 조 • 액법제 20 조	경 고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저장시 설은 시설봉 인
	○ 정기검사 생략업소의 자체검사 부적정	〃	시정명령	검사생략 취소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 하고 사용한 자	• 고법제 20 조 • 액법제 29 조 • 도법제 15 조	시설봉인			
	○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시공자가 시설의 설치 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 액법제 16 조 • 도법제 13 조 - 시공자	등록취소			

	자체검사 기록을 보존 하지 않거나 허위 작 성한 경우					
안전유 지 및 위해 방 지 조치	○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 한 때	• 고법제 38 조 - 사업자 - 종사자	사업정지 (30 일) 자격취소	허가취소		
	○ 사업자가 고의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 한 위해를 입혔을 시	• 고법제 9 조 • 액법제 8 조	사업정지 (30 일)	"		
	○ 과실로 공중 또는 사 용자에게 현저한 위해 를 입혔을 시		사업정지 (15 일)	사업정지 (30 일)	허가취소	
	○ 사업자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 고법제 13 조 • 액법제 12 조	개선명령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특정가스 사용시설이 시설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시 (가스용품도 포함)	• 고법제 20 조 • 액법제 29 조 • 도법제 17 조	시정명령	경 고	사용정지 (시설보 완시까지)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 위해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에 위해방지 조 치 불이행자	• 고법제 14 조 • 액법제 13 조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허가취소	
	○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 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고법제 13 조 • 액법제 12 조	사업정지 (10 일)	허가취소		
	○ 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용기에 가스를 충전한 경우 — 5 개미만 — 5 개이상	”	경 고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30 일)	허가취소	
	○ 충전 및 판매대장 기 록보존 불이행	”	경 고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 충전 및 판매대장 허 위기록 작성	”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 임시 합격시설의 사용 방법 및 기간의 불이행	• 액법제 19 조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임시합격 취소	

	○ 용기의 유지·관리상태 부적합	• 고법제 13 조 • 액법제 12 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안 전 관리자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채용인원이 기준에 미달	• 고법제 15 조 • 액법제 14 조	경 고	"	"	
	○ 안전관리자의 권고사항 미조치	"	"	"	"	
	○ 안전관리자의 유고시 직무대행자 미선임 및 동업무 방치	"	"	"	"	
	○ 안전관리자 직무태만	• 고법제 15 조 • 액법제 14 조 —사업자 —안전관리자	" "	" 해임명령	" 자격정지	
	○ 안전관리자 2중 취업	• 고법제 15 조 • 액법제 14 조 —사업자 —안전관리자	사업정지 (5 일) 자격정지	사업정지 (10 일) 자격취소	사업정지 (15 일)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용기등의 관리	○ 신규검사 미필용기 사용	• 고법제 17 조	사업정지 (30 일)	허가취소		회수명 평병행
	○ 재검사 미필용기 사용	〃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 내용연한 경과 용기 사용이나 손상 또는 합격 표시 훼손 용기 유통	• 고법제 19 조 • 고법제 17 조 — 10 개 미만 — 10 개 이상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사업정지 (15 일) 허가취소	
	○ 무자격자의 용기 등의 수리	• 고법제 5 조	고 발			
	○ 타종류의 고압가스 충 전	• 고법제 17 조	사업정지 (5 일)	허가취소		
	○ 무자격자에 의하여 용 기·냉동기 특정설비를 수리한 자	• 고법제 5 조	사업정지 (30 일)	〃		
가스용	○ 법정 표시상태 불량	• 액법제 22 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회수명

품의 품질보 장 등	가스용품의 제조·판매		(10일)	(20일)		령병행
	○ 가스용품 개조자(용도 변경 포함)	• 액법제 22 조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허가취소	〃
	○ 불량가스용품 회수명령 위반자	〃	사업정지 (15일)	사업정지 (30일)	〃	
시설의 시공관 리	○ 무자격자 또는 미등록 자로 하여금 시설을 시공·관리케 한 자	• 액법제 15 조 • 도법제 12 조 — 시공자	등록취소			
	○ 시공자별 자격과 공사 범위를 위반한 자	• 액법제 15 조 • 도법제 12 조 — 시공자	시공정지 (30일)	시공정지 (60일)	등록취소	
	○ 공사현장에 무자격자 배치	〃	경 고	시공정지 (30일)	시공정지 (60일)	
	○ 시공의 자체검사 기록 미제출	• 액법제 16 조	서류제출 명 령	사업정지 (3일)	사업정지 (5일)	
운 반 기 준	○ 고압가스 운반기준을 위반하여 운반하는 자	• 고법제 22 조	시정명령	사업정지 (5일)	사업정지 (10일)	
안 전 교 육	○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미이수자를 고용하고	• 고법제 23 조 • 액법제 31 조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있는 자	-사업자	경 고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사용신고 시설	"	시설봉안		
	○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미이수자	• 고법제 23 조 • 액법제 31 조	"	해임명령		
공 급 규 정	○ 공급규정 승인없이 영 업하는 LPG 집단공급 사업자 (변경 승인 포함)	• 액법제 26 조	"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 공급규정 변경명령 위 반자	• 액법제 27 조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 공급규정 게시 불이행	• 액법제 28 조	경 고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 공급지역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지역 이외에 가스를 공급한 자	• 액법제 25 조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정량판 매 및 판매제 한	○ 실량 미달 충전·판매 행위	·액법제 23 조 - 5개미만 - 5개이상	경 고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15 일)	
	○ 실량 표시증지 및 봉 인 증지 미부착 판매	·액법제 23 조 - 10개미만 - 10개이상	경 고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15 일)	
	○ 충전량 표시증지 위조 변조 또는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	·액법제 23 조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15 일)	사업정지 (30 일)	
	○ 용기에 충전된 LPG 를 감량 판매하는 자	"	사업정지 (15 일)	허기취소		
	○ 품질저하 행위자	·액법제 24 조	"	"		
	○ 품질저하된 가스판매자	"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20 일)	
	○ 시·도지사가 금지하는	"	경 고	사업정지	사업정지	

항 목	위 반 사 항	관 련 법 규	처 분			비 고
			1 회	2 회	3 회	
	지역 또는 건물내에 LPG를 공급하는 자			(5 일)	(10일)	
	○ 공급방법을 위반하여 공급하는 자	• 액법제 24 조	경 고	사업정지 (10일)	사업정지 (20일)	
보 험 가 입	○ 보험 미가입자	• 고법제 25 조 • 액법제 33 조	"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일)	
보 고 및 검 사	○ 업무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 불이행	• 고법제 26 조 • 액법제 35 조	"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 소속 공무원의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	사업정지 (10 일)	사업정지 (15 일)	
	○ 고압가스 용기 등이나 가스용품의 수거를 거 부한 자	• 고법제 27 조 • 액법제 36 조	사업정지 (3 일)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일)	
조 정 명 령	○ 조정명령 불이행자	• 액법제 34 조	사업정지 (5 일)	사업정지 (10일)	허가취소	
가 중 처 분	○ 이 규정에 의하여 3 회의 행정처분을 받고	• 고법제 9 조 • 액법제 8 조	허가취소			

	도 동일사항을 계속 위반하는 자					
	○ 사업(사용)정지 및 기타 정지명령 불이행자	• 고법제 9 조 • 액법제 8 조	허가취소			
기 타	○ 지시명령 불이행자	• 고법제 9 조 • 액법제 8 조	경 고	사업정지 (3일)	사업정지 (5일)	

(별지 제 1 호)

확 인 서

업소명 :

대표자 :

전화 :

소재지 :

본 업소에서는 198 아래 법규를 다음과 같이 위
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 위반법규 법 제 조 제 항
위반
- 위반내용

위 사실 확인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소재지 :

조사자 : 소속

근무

직

성명

○○시장, 군수, 출장소장 귀하

(별지 제2호)

행 정 처 분 장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귀 업소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8조 및 도시가스 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 처분함.

1. 처분사항 및 사유

1) 처분사항(내용)

2) 처분사유

2. 이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력조치를 할 것임.

198 년 월 일

○○ 시장, 군수, 출장소장 (인)

내무부장관 승인을 얻는 전라남도 읍면 상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985. 1. 21.

전라남도지사전석홍

전라남도 규칙 제 1414 호

전라남도 읍면상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전라남도 읍면상수도 지원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 (발행금액 종별 및 수량) ① 지방채는 년도별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발행한다.

⑤ 1985년도 지방채 발행금액은 2,847,000 천원을 한도로 하고 액면금액
발행종류와 발행증권과 종별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일천원권 : 87,000 매

2. 오천원권 : 104,000 //

3. 일만원권 : 132,000 매

4. 오만원권 : 18,400 "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발행기간) 지방채의 년도별 발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5 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5 년 1 월 1 일부터 1985 년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제 5 조(발행 이율) ① 1979 년부터 1982 년도의 지방채 발행 이율은 년 8 % 복리로 한다.

② 1983 년도 지방채 발행 이율은 년 6 % 복리로 한다.

③ 1984 년도 지방채 발행 이율은 년 6 % 복리로 한다.

④ 1985 년도 지방채 발행 이율은 년 6 % 복리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85 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한 지방채의 상환이 완료됨과 동시에 폐지한다.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 8 호

-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0 조,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이에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를 해당 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85. 1. 21.

전 라 남 도 지 사

-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별첨
-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 게재 생략)
- 도면은 해당 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보관. 끝.

1. 광주(광산)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가. 통신시설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통신시설 (광주방송국 송신탑)	광산군 비아면 수완리 128-5번지선	34,550	
나. 학 교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당초	학 교 (문성상업고)	광주시 서구 봉선동 599-1번지선	38,761	
변경	학 교 (문성중, 상업고)	"	57,960	
2. 목포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가. 학 교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학 교 (인성특수학교)	목포시 석현동 산31-8 번지선	15,100	
당초	학 교 (목포여상고)	목포시 상동 산70-1 번지선	29,380	
변경	학 교 (목포여상고, 영화중)	"	35,960	

3. 여수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조서									
가. 학 교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당초	학 교 (진성여중, 여상고)				여수시 봉강동 203-1 번지선			37,090	-
변경	"				"			41,931	
나.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호선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당초	소로	2	537	8	455 m	봉강동 843 전		봉강동 725 전	
변경	"	2	537	8	413 "	"		봉산동 산 746 전	
당초	"	2	576	8	210 "	봉강동 807 답		봉강동 719-1 전	
변경	"	2	576	8	193 "	"		봉산동 산 810 답	
당초	"	2	629	8	193 "	봉강동 438 전		봉강동 726	
변경	"	2	629	8	55 "	"		봉강동 719-1 전	
4. 금성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가. 공용의 청사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공용의 청사 (나주군 농촌지도소)				금성시 송월동 921-6 번지선			3,960	
5. 청계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가. 학 교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설	학 교 (국립목포대학)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45번지선			684,421	

나.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호선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신설	소로	3	23	6	862 m	소 2-19 도림 321-1 전	도림 127-1 전
"	"	3	24	6	162 "	대 1-1 도림 367-11 도	도림 8-1 도

6. 대덕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가. 도 로

구분	등급	류별	호선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당초	소로	2	18	8 ^m	168.5 ^m	중 2-1 연정리 394-2 도	소 2-15 연정리 390 전
변경	"	2	18	8"	174 "	"	"

- 끝 -

전라남도 고시 제 9 호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광영 이주단지내 광영상수도 사업 실시 계획을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1 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 7 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5. 1. 21.

전라남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광영 상수도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광양군수 정 영 식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목적 :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광영 이주단지내 주민의 식수난 해결

나. 개요 : { 시설 용량 = 2,000 톤/일
 송수 관로 : $D = 200 \%$ $L = 1,200 m$
 배수 관로 : $D = 80 \sim 200 \%$ $L = 4,820 m$

4. 사업시행 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광양군 옥곡면 광영리 지내

나. 면적 : $2.404 m^2$

5. 사업시행 기간 : 승인일 - '86. 12. 30

6. 서류의 공시 송달방법 : 산업기지 개발촉진법 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함.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조서 : 별첨

8.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끝.

전라남도 고시 제 10 호

어선법 시행규칙 제 12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선 호
출부호를 취소 및 지정하였기 고시함.

1985. 1. 28.

전 라 남 도 지 사

○ 어선호출부호 취소 및 지정 명세

소 유 자		선 명	톤 수	선 질	업 종	호 출 부 호		지 정 일 자
주 소	성 명					취 소	지 정	
여수 국동 193 - 539	박강호	제 108 만승	118.78	강	근 해 안강망	H.L.R.T	D.T.G.R	'85. 1. 21
여수 관문동 419	김복동		120.0	"	근 해 유자망	-	D.T.G.P	'84. 12.17
무안 해제 양 배 910	조경수	88 덕양	106.0	"	근 해 채낚기	-	6 KGY	'84. 9. 7

공 고

전남 공고 제 33 호

수산업법 제 8 조 제 1 항 및 어업자원 보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면허 처분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1. 22.

전 라 남 도 지 사

어업면허처분내역

면허번호	양식물	어업권자		어장위치	면적	면허기간	비고
		주소	성명				
제 3 종 제 863 호	형 망	고흥, 봉래, 사양	어촌계장 김 근 중	봉래, 사양	97.5	85. 1.22 ~ 90. 1.21	

전남 공고 제 34 호

수산업법 제 1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어업권 유효기간 연장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1. 22.

전라남도지사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명세

면허번호	양식물	면적	어업권자주소	성명	어장위치	허가기간	비고
완도양식 제 251 호	김	58,000	완도, 완도, 군 내 822 - 83	완도군 수협장	금일, 일정	85.2.13 92.2.12	제 1 차 연 장 어업권
" 253 호	"	184,000	"	"	금일, 화정	"	"
" 254 호	"	48,000	"	"	금일, 신도	"	"
" 259 호	"	148,000	"	"	금일, 대철 가도	"	"
" 243 호	"	72,000	"	"	금일, 척치	"	"
" 244 호	"	124,000	"	"	금일, 신구	"	"
" 245 호	"	56,000	"	"	금일, 척치	"	"
" 246 호	"	600,000	"	"	금일, 송도 신평	"	"
" 247 호	"	404,000	"	"	금일, 공항	"	"

면허번호	양식물	면 적	어업권자주소	성 명	어장위치	허가기간	비 고
완도양식 제 248 호	김	632,000	완도, 완도, 군 내 822-83	완도군 수협장	금일, 월송 궁항	85.2.13- 92.2.12	제 1 차 연 장 어업권
" 249 호	"	112,000	"	"	금일, 소랑 도	"	"
" 250 호	"	152,000	"	"	금일, 동백	"	"
" 255 호	"	302,000	"	"	금일, 충도	"	"
" 256 호	"	360,000	"	"	금일, 금곡	"	"
" 257 호	"	212,000	"	"	금일, 용출 봉석	"	"
" 260 호	"	1,450,000	"	"	금일, 가학 서	"	"
" 262 호	"	48,000	"	"	금일, 차우 세포	"	"
" 198 호	"	1,608,000	"	"	고금, 봉암	"	"
" 199 호	"	104,000	"	"	고금, 상정	"	"
" 200 호	"	192,000	"	"	고금(황도)	"	"
" 201 호	"	20,000	"	"	고금, 상정	"	"
" 202 호	"	508,000	"	"	고금, 척찬	"	"
" 203 호	"	24,000	"	"	고금, 덕동	"	"
" 204 호	"	20,000	"	"	고금, 덕동 윤동	"	"
" 205 호	"	10,500	"	"	고금, 덕동	"	"
" 206 호	"	12,000	"	"	고금, 묘당	"	"
" 207 호	"	52,000	"	"	"	"	"

완도양식 제 209 호	김	48,000	완도, 완도, 군 내 822-83	완도군 수협장	고금, 압도	85.2.13- 92.2.12	제 1 차 연 장 어업권
" 211 호	"	64,000	"	"	고금, 넓도	"	"
" 214 호	"	1,272,000	"	"	고금, 청학	"	"
" 216 호	"	640,000	"	"	고금, 용초	"	"
" 218 호	"	20,200	"	"	고금, 초완 도	"	"
" 179 호	"	388,000	"	"	완도, 망납	"	"
" 180 호	"	228,000	"	"	완도, 중도	"	"
" 185 호	"	40,000	"	"	군외, 달도	"	"
" 186 호	"	100,000	"	"	군외, 황진	"	"
" 188 호	"	1,730,000	"	"	군외, 당인	"	"
" 190 호	"	2,791,000	"	"	군외, 사후 도	"	"
" 193 호	"	20,000	"	"	"	"	"
" 194 호	"	68,000	"	"	군외, 백일 도	"	"
" 195 호	"	68,000	"	"	"	"	"
" 196 호	"	76,000	"	"	"	"	"
" 197 호	"	128,000	"	"	군외, 흑일 도	"	"
" 220 호	"	20,000	"	"	신지, 강독	"	"

면허번호	양식물	면 적	어업권자주소	성 명	어장위치	허가기간	비 고
완도양식 제 223 호	김	76,000	완도, 완도, 군 내 822-83	완도군 수협장	신지, 동고	85.2.13- 92.2.12	제 1 차 연 장 어업권
" 225 호	"	88,000	"	"	신지, 월양	"	"
" 226 호	"	56,000	"	"	신지, 향포	"	"
" 227 호	"	182,000	"	"	신지, 망동	"	"
" 228 호	"	84,000	"	"	신지, 산동	"	"
" 229 호	"	104,000	"	"	"	"	"
50 건							

전라남도 공고 제 35 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규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 년도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85 년 1 월 28 일

전라남도지사 전 석 홍

1. 명예퇴직 대상자

2 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 신청 개시일 현재 20 년이상 근속한 자 중

가. 정년퇴직일전 1 년이상 5 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 년초과 10 년이내에 자진 퇴직하는 자

2. 명예퇴직 대상 인원 : ○ ○ 명

3.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기간 : 1985 년 3 월 2 일 ~ 3 월 9 일 (8 일간)

나. 신청절차 : 명예퇴직 신청 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를 구비하여 소속 기관장을 거쳐 본도 서무과에 제출바람.

4. 명예퇴직 대상자 결정 및 통지

가. 85 년 3 월중 전라남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 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나. 명예퇴직 수당을 85 년 4 월말 이내에 지급 완료한다.

5. 기타사항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도 서무과 (인사계) 로 문의하기 바람.

전라남도 공고 제 36 호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4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5 조 규정에 의거 축산물 작업장(도축장) 허가사항을 변경 허가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40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1. 25.

전 라 남 도 지 사

1. 작업장명 : 영암 특급 도축장
2. 소재지 :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59-2
3. 변경허가 명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작업장 명칭	영암 특별 도축장	영암 특급 도축장
작업실(우.돈)	198 m^2	우 108.9 m^2 돈 165 m^2
검 사 실	6.6 m^2	14.8 m^2
냉 장 실	33 m^2	82.5 m^2
우계류사	33 m^2	132 m^2
돈계류사	49.5 m^2	66 m^2
변 소	6.6 m^2	16.5 m^2
휴 게 실	—	16.5 m^2
목욕 및 쉼의실	—	26.4 m^2
전기저울 및 박피기	—	각각 1 대
아이빔 시설	—	우.돈작업실 각각 시설

전라남도 공고 제 37 호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4 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 15 조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 작업장 (축산물 가공장) 허가 사항을 변경 허가하였기 동법시행
규칙 제 40 조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1985. 1. 25.

전라남도지사

1. 작업장명 : 영암축산물 가공장
2. 소재지 :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 159-3
3. 시설변경허가명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작업장명칭	영암 축산물 가공장	영암 축산물 가공장
작업실	184.8 m ²	330 m ²

화순군 공고 제 6 호

화순군 공인조례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 개각 사용 및 폐기 상
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5. 1. 25

화 순 군 수

○ 개각 공인 사용 및 폐기 일시 : 1985 년 2 월 4 일 0 시

○ 개각 공인 및 폐기 공인인영 : 별 첨

공인명	개각인영	폐기인영	공인명	개각인영	폐기인영
화순 군수인			청풍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화순 군수인 (민원실 전용)			이양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화순 군보건소장 인			능주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화순 읍장인 (민원사무전용)			도곡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천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도암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춘양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이서 면장인 (민원사무전용)		

공인명	개각인영	폐기인영	공인명	개각인영	폐기인영
북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화순읍 계인 (민원사무용)		
남면장인 (민원사무전용)			한천면 계인 (민원사무용)		
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춘양면 계인 (민원사무용)		
도암 면장인 (용강출장소전용)			계풍면 계인 (민원사무용)		
화순군 계인 (민원사무전용)			이양면 계인 (민원사무용)		
화순군 보건 계인			능주면 계인 (민원사무용)		

공인명	개각인영	폐기인영	공인명	개각인영	폐기인영
동북면 계인 (민원 사무용)			화순군 수입금 출납원인		
남면계인 (민원 사무용)			화순군 지출원인		
동면계인 (민원 사무용)			화순군 물품 출납원인		
화순군 세입 징수관인			화순군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인		
화순군 경리관인					
화순군 물품 관리관인					

다음 표시 차량은 도로운송 차량법 제 13 조 및 자동차 등록령 제 23 조
4 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 말소하였음을 알립니다.

자동차의 표시

등록번호	차 명	년 식	차 대 번 호	원 등 기 번 호
전남 7 나 5860	타이탄 디젤 14	78	03 - 78 - 12 - 06499 대기	03 - 78 - 12 - 06499 기
전남 7 나 6095	새한 2.5 톤 카고	79	03 - 79 - 12 - 20571 대기	03 - 79 - 12 - 20571 기

'84 전남지역개발성금 결산공고

전남지역개발 및 지역사회 안정 성금 집행 결과를 별첨과 같이 송부하
니 도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전남지역개발 및 지역사회안정 성금 접수 및 집행결과를 다음과 같
이 공고함.

'84 全南地域開發誠金決算

○ 誠 金 總 額 4,894,800 千원

單位：千원

區 分	合 計	'83 年度	'84 年 度		
			計	入 金	未 入 金
合 計	4,894,800	2,456,055	2,438,745	2,155,995	282,750
道 接 受	4,555,890	2,118,700	2,437,190	2,154,440	282,750
開發協議會接受	9,355	7,800	1,555	1,555	
-南道獎學基金	152,555	152,555			
移管 -어린이大公園 基 金	177,000	177,000			

○ '84 寄託現況 (道寄託)

單位：千원

區 分	計		道 內		道 外	
	人 員	寄 託 額	人 員	寄 託 額	人 員	寄 託 額
計	59	2,437,190	39	793,990	20	1,643,200
建 設 業 體	19	121,000	19	121,000		
企 業 體	29	2,133,140	12	493,140	17	1,640,000

區 分	計		道 內		道 外	
	人 員	寄 託 額	人 員	寄 託 額	人 員	寄 託 額
運 輸 業 體	2	106,400	2	106,400		
醫 藥 業 界	2	55,450	2	55,450		
金 融 業 界	1	5,000	1	5,000		
學 園 界	1	10,000	1	10,000		
水 產 業 體	1	1,000	1	1,000		
其 他	4	5,200	1	2,000	3	3,200

○ 執 行 狀 況

單位：千원

區 分	前 年 度 移 越 額	寄 託 額	執 行	殘 額
計	174,100	2,437,190	2,221,540	389,750
全南地域開發協議會 (基金造成)			1,655,540	• 現 金： 57,000
全 羅 南 道 體 育 會			500,000	• 證 券： 50,000
全羅南道防衛協議會			30,000	• 未入金： 282,750
새마을운동全南道支會			30,000	

○ 寄託金 缺損處分額 ————— 6,000 千원

※ 缺損處分事由：寄託會社 不渡

└ 光一土建 (李漢柱) : 3,000 ~ '84. 8.14 不渡

└ 金星建設 (姜太秀) : 3,000 ~ '84.11.20 //

사 령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기 통지함.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호 봉	부 서	직 위	직 급	호 봉	
조안숙	원혜 면함.	의하여	그 직을		여 성 회 관		지방별정 8급상당	6	
			이 하		여 백				

1985. 1. 21.

성 명	신 임				현 임				비 고
	부 서	직 위	직 급	호 봉	부 서	직 위	직 급	호 봉	
임명화	내무국 서무과		지방경노 무고용직	1		신	규		
			이 하		여 백				

1985. 1. 22.

전 라 남 도 지 사